

## ◆ 보험가액과 보험금액

### 1. 보험가액의 의의

-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한도
-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
-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
-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가액 초과 불가능
- 보험자의 보상도 보험가액한도 내에서 가능

### 2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비교

#### (1) 보험가액

-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한도

#### (2) 보험금액

-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계약상의 지급 최고한도

#### (예) 20억 가치의 빌딩을 화재보험에 가입

- 보험가입명세서에 전손사고 시 계약상 지급 최고 한도액을 19억으로 보험계약
- 이 경우 빌딩의 시가(時價)에 해당하는 20억은 보험가액(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)이고 19억은 보험금액에 해당

### 3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불일치

#### (1) 전부보험

=> 보험가액 = 보험금액

#### (2) 초과보험

=> 보험가액 < 보험금액

#### (3) 일부보험

=> 보험가액 > 보험금액

## ◆ 초과보험의 이해

### 1. 초과보험의 정의

-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(보험가액 < 보험금액)

### 2. 초과보험의 발생시기

#### 1) 보험계약체결 시

예) 시가(보험가액) 20억 빌딩을 화재보험가입 시  
보험금액을 22억으로 책정

#### 2)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시

예)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 20억 빌딩을 화재보험가입시  
보험금액도 20억으로 책정

- 그 이후 부동산가격하락(물가변동)으로 빌딩의 시가가 18억으로 감소

### 3. 초과보험의 요건

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'현저하게' 초과해야 함

- '현저하게'란 통상적인 사회거래의 개념에 의해 정해짐

예) 시가(보험가액) 20억 빌딩을 보험금액 22억으로 화재보험 가입은  
2억의 차이로 현저하다 할 수 있음.

그러나 동일 빌딩을 보험금액 20억 10만원으로 보험가입 할 경우는  
차이가 10만원으로 20억에 비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.

### 4. 초과보험의 산정시기

- 보험가액의 산정시기가 초과보험의 성립여부를 결정
-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체결 당시
- 보험계약 체결 후 물가하락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 경우,  
감소된 그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산정

### 5. 초과보험의 종류

#### (1) 선의의 초과보험

- 물가변동 등과 같은 선의에 의한 초과보험

(2)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

- 보험계약자의 사기(전손시 실손해액보다 많은 보상 받기 위한 사기)

6. 초과보험의 효과

(1) 선의의 초과보험의 효과

- 계약당사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 가능
- 보험가액 변동은 계약당사자 자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험금액 감액해야 함
- 보험금액 감액에 따라 보험료도 감액되어야 형평성이 유지됨

(2)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효과

- 계약전체가 무효
- 보험자는 보험료 반환의무지지 않음
-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도 청구 가능

◆ 중복보험의 이해

1. 중복보험의 의의

- 초과보험의 일종
-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

예) 동일 WTC빌딩에 여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체결,

보험계약전체의 보험금액 합계가 WTC빌딩 시가(보험가액)보다 초과  
만약 WTC빌딩의 시가(보험가액)이 1000억인 경우

각 보험계약 보험금액 합계가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

- '현저하게' 초과를 요구하지 않음
- 상법 제672조 2항: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.

## 2. 중복보험의 성립요건

- (1) 동일한 피보험이익
- (2) 동일한 보험사고
- (3) 동일 또는 중복되는 보험기간
- (4) 수개의 보험계약
- (5)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

## 3. 중복보험의 종류

- (1) 선의의 중복보험
  - 물가변동 등과 같은 선의에 의한 중복보험
- (2)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
  - 보험계약자의 사기(전손시 실손해액보다 많은 보상 받기 위한 사기)

## 4. 중복보험의 효과

- (1) 선의의 중복보험의 효과
  - 연대비례보상주의
  - 보험자들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

예) 1000억 보험가액의 WTC빌딩을 갑, 을, 병 3개 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

- 갑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은 500억
- 을과의 보험금액은 200억
- 병과의 보험금액은 300억
- 보험금액 합계는 1000억 => 중복보험 아님
-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빌딩가격이 900억으로 감소  
=> 선의의 중복보험 성립
- 보험사고 시 연대비례 보상하게 됨

### (2)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의 효과

-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규정 준용
- 계약전체 무효

예) 1000억 보험가액의 WTC빌딩을 갑, 을, 병 3개회사와 화재보험가입

- 갑과의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은 500억
- 을과는 300억, 병과는 400억
- 보험금액 합계 1200억 > 보험가액 1000억 중복보험 성립
-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=> 보험계약 전체 무효

## 5.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

-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지 않음

예) 위의 WTC빌딩의 선의의 초과보험의 경우,

물가하락으로 빌딩가격 1000억에서 900억으로 하락

- 화재로 전손시 갑, 을, 병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금액에 비례해서 보상의 책임 가짐
- 갑:을:병 = 500억:200억:300억 = 5:2:3의 비율로 보상의 책임을 짐
- 이 경우 피보험자가 갑 보험회사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머지 을, 병 보험회사는 영향받지 않고 각자의 2와 3에 해당하는 손실만 담당하면 됨

## ◆ 일부보험의 이해

### 1. 일부보험의 의의

-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보험 (보험가액>보험금액)

예) 20억 시가(보험가액)의 빌딩을 18억 보험금액으로 화재보험계약 체결

### 2. 일부보험의 발생원인

#### 1) 보험료 절약

- 보험금액 액수가 적을수록 보험료 적음
- 대부분의 손해가 전손보다 분손

#### 2) 물가변동

- 보험가입 시 전부보험, 물가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증가

### 3) 보험인식부족

- 보험모집주체의 보험인식 부족

### 3. 일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의 산정

#### (1) 기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의 산정

- 기평가보험은 보험계약당사자가 미리 보험가액을 정함
- 기평가보험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됨
- 단,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 초과 시는  
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

#### (2) 미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의 산정

- 미평가보험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험
-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함

### 4. 일부보험의 효과

#### (1)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

-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 
손해보상 가능
-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실제 손해액 전액 보상이 가능  
=> 실손해보상특약(제1차위험보험제도)

#### (2)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

-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 
=> 비례부담의 원칙

예) 시가 1000억 빌딩을 800억 보험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 후  
화재 발생하여 600억 손실 경우

- 1) 실손해보상특약: 실손해인 600억 보상도 가능
- 2)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비례부담의 원칙이 적용:

$$\begin{aligned} \text{보험금} &= \text{손해액} \times (\text{보험금액}/\text{보험가액}) \\ &= 600\text{억} \times (800\text{억}/1000\text{억}) = 480\text{억} \text{ 보상} \end{aligned}$$

## ◆ 보험자 대위

### 1.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종류

#### (1) 보험자대위의 의의

- 보험자가 보험금액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

#### (2) 보험자대위의 종류

- 1) 잔존물대위
- 2) 청구권대위

### 2. 잔존물대위의 의의

-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
- 일명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
- 손해보험에서 물건보험에서만 적용
- 이득금지의 원칙 실현에 그 목적

### 3. 잔존물대위의 요건

#### (1) 보험목적의 전손

-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멸실

#### (2) 보험금액의 전부지급

- 손해방지 비용도 포함됨

### 4. 청구권대위의 의의

-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
- 보험금액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
-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청구권,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
- 다 사용 경우 이중이득 취함, 이득금지의 원칙 위배

- 청구권대위의 목적은 이중이득금지의 원칙 실현

#### 5. 청구권대위의 요건

##### (1) 제3자에 의한 손해 발생

- 제3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제외한 모든 자
- 전손이나 분손 모두 가능

##### (2) 보험금의 지급

- 보험자는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

#### 6. 청구권대위의 효과

- 권리 당연 취득
- 민법상 채권양도 절차 불필요
- 보험금액의 일부지급 시 보험자는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권을 취득